

1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0년 귀속 연말정산('21.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②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③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와 ④ 「My 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6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예,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등록 방법

- ①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 ② 아래에 활성화 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 ③ 등록하기 선택 ⇒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됨

* 귀속년도: 2020년 | 전체선택: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 의료비신고 |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2,865,155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rsonal Savings)	주택자금/월세액 (Housing Funds/ 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본내역 | PDF다운로드 | 인쇄하기 | 의료비 안내 | 의료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의료비

인별 선택	환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지출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계...	101-91-56996	아무개	산후조리...	1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계...	101-22-34567	테스트	의료기기...	3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계...	101-22-34567	테스트	안경 도...	35,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계...	101-22-34567	테스트	산후조리...	25,000

인별합계: 1,36,700 원

* 실손의료보험지급

인별 선택	계약자	종류	상호	증권번호	지급금액	피보험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우정	실손보험1	신티무종출회	218352331206	550,000	민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우정	실손보험1	신티무종출회	348186777786	600,000	민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우정	실손보험1	신티무종출회	359378402784	600,000	민공정

인별합계: 2,728,455 원

선택: 12 건 | 선택합계: 2,865,155 원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애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 본인과 부양가족이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입니다. (제공동의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란에서 구매자(본인 또는 부양가족)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시	구분	카드사용자	구입처	구입금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8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